

---

- 2015년도 본청 재무감사(8월)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2015년도 본청 재무감사(8월)

# 감사결과 처분 요구 목록

일련 번호	제 목	비 고
합계	13건	
1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2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3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4	급량비 집행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	
5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6	준공대가 지급기한 미준수	
7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9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10	환경보전비 집행 부적정	
11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12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13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일련번호: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4,310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카드결제 통장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건 명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계	2건	4,310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4. 12. 28.	3,740	미조치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5. 06. 28.	570	미조치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

여야 하고,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3에 따르면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2014.12.28.부터 2015.06.28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4,310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4,310원은 세입조치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현황

지급일	적요	지급액(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4건	5,304,000		
2013.11.05.	☆☆☆관리실 생수구입 (9월~10월)	60,00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3.12.23.	디지털카메라 소모품 구입	840,000	“	“
2013.12.27.	★★★ 불꽃감지기 교체공사	759,000	“	“
2014.04.01.	●●●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3,645,000	“	“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

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별표 1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행사운영비(201-03)로 대분류하고,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고, 공공운영비(201-02)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등을 집행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11.5. “☆☆☆관리실 생수구입” 외 3건 5,304천 원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공공운영비(201-02)에서 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예산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과목구분에 적합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지역개발채권 미소화액
2014. 11. 06.	2014 ☆☆☆ 음향장비 임차용역	★★★	1,320	30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4 ☆☆☆ 음향장비 임차용역”의 계약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채권 30천 원을 미소화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대금청구액이 1,000천 원 이상인 때에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급량비 집행시 현금영수증 카드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급량비 신용카드 집행현황

연도별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결제방법
2014	2014.09.05.	8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98,000	신용카드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례 규칙 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 제공 시 1인 1식당 7천원 이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4.9.5. 8월분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 98천 원을 1개 업체에 집행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준수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70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카드결제 통장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건 명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계	4	570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3. 12. 29.	210	미조치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4. 06. 29.	40	미조치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4. 12. 28.	270	미조치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5. 06. 28.	50	미조치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3에 따르면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2013.12.29.부터 2015.06.28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570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2013년 12월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570원은 세입조치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준공대가 지급기한 미준수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준공대가 지급기한 미준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적요	계약금액 (원)	납품일자 (검수일자)	청구일자 (세금계산서 접수일자)	대금지급 일자	지연 기간
	3건	1,898,600				
1	☆☆☆ 주소기재 라벨테이프 구입	1,485,000	2014.03.31. (2014.03.31.)	2014.03.10.	2014.04.16.	20일
2	★★★ 혈압측정기 수리비	330,000	2014.07.20. (2014.07.20.)	2014.07.10.	2014.07.31.	8일
3	●●● 의견제출필지 검증 감정평가 수수료	83,600	-	2015.05.13.	2015.05.27	2일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제2항에 따르면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주소기재 라벨테이프 구입” 등 3건의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로부터 일련의 청구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2건에 대해서는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지급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출원 집행대상 경비(201-01)를 일상경비로 집행한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증빙번호	적 요	채 주	지출액(원)	비고
2015.04.10.	119	☆☆☆ 건물번호판 구입	★★★	5,013,580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67조, 제7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무관 등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를 그 성질상 출납원이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5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2015. 4. 10. “☆☆☆ 건물번호판 구입”에 대하여 일상경비출납원의 집행범위를 초과한 경비를 지출원에게 집행을 의뢰하지 않고 일상경비출납원이 직접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출원 집행대상경비를 일상경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일상경비 출납원의 집행범위”를 준수하여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구입과 지출결의서 미사용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결의서 종류	적 요	지출금액	지급방법
계		4건	1,969,500	
2014.03.10.	일반	☆☆☆ 현수막 제작	900,000	계좌입금
2014.09.18.	일반	★★★ 구입	220,000	계좌입금
2014.09.18.	일반	●●● 현수막 제작	780,000	계좌입금
2014.09.25.	일반	△△△ 도서구입비 지출	69,500	계좌입금

##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6장 제121조(계약의 체결) 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이나 [별지 제50호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 의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현수막 제작” 등 총 4건 1,969,500원을 지출하면서 채주에 계좌입금을 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구입(물품, 기타) 지출결의서에 의해 주문, 납품, 검수 등 회계절차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 지출결의서에 의해 회계서류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계약의 체결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라 계약 내용에 따른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9】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3,550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카드결제 계좌 현황

(단위 : 원)

통장잔액 (2015.7.13.)	결제대금 미청구액	추징 대상 금액		
		합계	이자발생액	기타(과다 입금액)
23,550	0	23,550	1,550	22,000

나. 카드결제 통장 발생이자 현황

(단위 : 원)

건 명	발 생 일	금 액	세입조치 여부
카드결제 통장 이자	2015. 6. 28.	1,550	미조치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이하 “법인카드”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

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또한, 착오입금 등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반납조치를 하는 등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하고,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의3에 따르면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 “가”와 같이 잔액 23,550원 중 2015.06.28까지 발생한 예금이자 1,550원을 추징처리 하지 않았으며, 그 외 22,000원이 과다 입금한 잔액이 확인되었는데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정리하지 않은 채 법인카드 결제통장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과다 입금된 22,000원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2015년 6월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 1,550원은 세입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9,410원

【제 목】 환경보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공사명 : ★★★ 노후시설 보수공사
- 공사기간 : '13. 11. 6. ~ '13. 12. 2.
- 계약금액 : 금3,680,000원
- 지출일 : '13. 12. 9.
- 도급사 : ●●●합자회사 ○○○○
- 보험료 등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합계	보험료				환 경 보전비	제경비	
	산재	고용	건강	연금		일 반 관리비	이 윤
9,412	-	-	-	-	8,177	490	745

- 일반관리비 : (보험료+환경보전비)\*6%

- 이 윤 : (보험료+환경보전비+일반관리비)\*8.60384%

## 2. 내 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건설업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환경보전비 9,412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관련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비에 대한 사용내역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정산하지 않은 환경보전비 9,410원은 세입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3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지역개발채권 미소화액
2013. 11. 26.	2013 ★★★ 앰프시설 임차용역	●●●	1,300	30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 ★★★ 앰프시설 임차용역”의 계약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지역개발채권 30천 원을 미소화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대금청구액이 1,000천 원 이상인 때에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1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실소화액	부적정 사유
2014.8. 6.	★★★ 시스템 유지보수	(주)☆☆☆	2,200,000	80,000	25,000원 과다 소화
2015.1. 9.	●●● 홍보 광고료	△△△	14,271,300	360,000	5,000원 과다 소화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

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만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천 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천 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시스템 유지보수” 및 “●●● ● 홍보 광고료”를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이므로 대금청구액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함에도 총 30천 원을 추가로 소화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대금청구액이 1,000천 원 이상인 때에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1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작성 내역

적 요	미작성 기간	비 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2014. 8. 7. ~ 2014. 12. 31.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2014. 1. 1.)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중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에 따르면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

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서는 2014년 8월 7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사용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